

1.

가. : 2003 11 24

. : 2003 11 24

.

. 109 ( ) 7 (2003 12 15 )

2.

( : )

가 , ,

2004

( )

.

. ( 7 4 )

3.


4.

가.

.

5.

6.

7.

#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03호
의결 년월일	2003. 12. 23 (제109회)

제출년월일 : 2003. 11. 24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## □ 제안이유

- 자치단체가 당직근무인력, 당직시설상태,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(행정자치부)이 시달되어 이에 상응하게 기준을 정하여 당직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.

## □ 주요골자

-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7조제4항 신설)

부천시조례 제 호

##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당직근무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당직 및 비상근무) ① ~ ③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</p> <p>④(생략)</p>	<p>제7조(당직 및 비상근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④당직근무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⑤(현행 제4항과 같음)</u></p>